미국 유산세 90년사[1]

<목 차>

Ⅰ. 서론
Ⅱ. 소득통계국의 유산세 연구
Ⅲ. 역사적 배경
Ⅳ. 현대의 유산세
Ⅴ. 양도세 제도의 범위
Ⅵ. 기부
Ⅶ. 자산 구조
Ⅷ. 결론

Ⅰ. 서론

세계법제정보센터

지난 90년간 미국 역사의 주요 순간마다 미국 연방정부는 수입원으로 유산세와 상속세를 활용하여 왔다. 이를 지지하는 측은 주로 이러한 세금이 권력을 가진 소수의 가계에 부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율적 도구임을 옹호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양도세가 자금의 축적을 어렵게 하여 국가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긴장 관계는 정부의 재정 정책을 비롯한 다른 사안과 맞물려 연방 유산세법의 주기적인 개정으로 이어졌고, 이는 곧 세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과 세수의 규모에 대한 영향으로 나타났다.

1) 이 보고서는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발표한 "The Estate Tax: Ninety Years and Counting" 보고서의 번역본임. 원문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 바람: https://www.irs.gov/pub/irs-soi/ninetyestate.pdf

Ⅱ. 미국 국세청 소득통계국의 유산세 연구

소득통계국(the Statistics of Income Division, SOI)과 그 전신 기관은 미국 유산세가 도입된 1916 년 이래로 연방 유산세 신고를 한 유산에 대한 통계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이 자료들은 조세를 운용하고 미국 최상위 자산가들의 재정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유산세 신고 통계자료는 종종 연간 세입의 추정과 향후 세입 예측에 사용된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소개되는 세법 개정을 위한 분석 및 논의를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들이 활용되어 왔다. 이처럼 유산세 통계는 상위 부유층의 경제·사회적 행동양식에 대한 세법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자주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유산세 징수가 사업과 농장의 지속 기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피상속인의 유산기부 양상에 대한 세금의 영향 등과 같은 분석은 정책입안자들이 유산세법 개정을 논의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유산세 통계는 세금 정책의 시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상주 인구가 보유한 개인 재산에 대한 주기적 추정치의 기초를 마련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재산 추정치는 유산계수법(estate multiplier technique)을 이용하여 유산세 자료로부터 도출하며, 최상위 자산계층의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운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보충하는 가치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의 거시적 분석을 위한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다.[2] 소득통계국은 1962 년에 유산세 자료에서 도출된 개인 재산 추정치를 최초로 공개하였는데, 이는 그 이전에 소득통계국의 통계표를 활용하여 비슷한 추정치를 발표하였던 호르스트 멘더스하우젠(Horst Mendershausen)과 로버트 램프먼(Robert Lampman)과 같은 학자들의 연구를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소득통계국의 유산세 통계자료는 부의 세대 간 이동에 대한 연구에 활용되고 있

2) 부의 측정을 위한 유산계수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존슨 외 (1993), "유산계수법, 1989 최근 개선사항", 연방유산세와 개인 재산 연구 총서, 391-400, 소득통계국.

으며, 피상속인의 생전 소득세 신고 통계와 더불어 경제 복지를 위한 정책의 도입에도 이용되고 있다.

III. 역사적 배경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양도, 이전 또는 수령 권한"에 대한 다양한 각종 세금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망세"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왔다.[3] 인지세(stamp tax 또는 stamp duty)는 유언장과 같은 법률 문서의 등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유산세(estate tax)는 사망 시 재산을 양도하는 특권에 대해 부과되는 일종의 소비세로,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상속세(inheritance tax 또는 legacy tax)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수증 받는 특권에 대해 부과되는 소비세이다. 상속세는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와 피상속인과 각 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4]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양도에 대한 세금의 기원은 이르게는 기원전 700년의 고대 이집트로 거슬러 올라간다.[5] 약 2천 년 전 고대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가까운 친족을 제외한 모든 개인 간의 상속과 유산에 대해 세금(Vicesina Hereditatium)을 부과하였다.[6] 중세 유럽에서 가족의 사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매우 흔했고, 보통 해당 가족의 연간 지대(地代)에 추가로 부과되었다. 18세기에는 많은 국가들이 유언장, 명세서, 그리고 사망 시 재산을 양도하는 문서에 부과하는 인지세와 등기료를 도입하였는데, 신생국가인 미국도 그 중 하나였다.

3) 실버스타인 (2003), "상속세의 역사-세입원 또는 부의 재분배 도구", 브랜다이스 대학원 저널, 1권, 1호 www.brandeis.edu/gradjournal, 1쪽.
4) 비트커 외 (2005), 유산 및 증여 연방조세제도, 9차 개정판, 톰슨/웨스트,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9쪽.
5) 폴 (1954), 미국의 조세제도, 리틀브라운앤컴퍼니,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6) 스미스 (1913), 국부론, E.P. 듀튼, 뉴욕.

1. 1797 인지세

1797 년 미국 의회는 1794 년부터 조짐이 있었던 프랑스와의 선전포고 없는 전쟁에 참전하는 미 해군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세입원으로 인지세를 도입하였다. 유언장 외에도 명세서와 유산관리장의 공증에는 반드시 연방정부의 인지가 있어야 했다. 유산의 수증과 처분을 비롯하여 유언장이 없는 재산의 분할에도 인지가 반드시 필요했다.[7] 사망자 유품 명세서에 부과된 인지세는 10 센트, 유언장과 유산관리장의 공증에 대해서는 50 센트의 인지세가 부과되었다. 유산의 수증에 대한 세금의 경우 50 달러 이상의 유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였는데, 여성 배우자(남성 배우자 제외)를 비롯하여 자녀 및 손자녀는 면제 대상이었다. 50 달러-100 달러 사이 규모의 유산에 부과된 세금은 25 센트, 100 달러~500 달러의 경우에는 50 센트였으며, 이보다 더 큰 유산의 경우, 500 달러마다 1 달러가 추가되었다. 1802 년이 되어 프랑스와의 대립이 끝나자 이 세금은 폐지되었다.[8]

2. 1862 「세입법」

미국 남북전쟁 직전 연방 예산의 많은 부분이 수입 관세와 공공용지 매각과 같은 수입원으로 충당되었다. 남북전쟁의 발발로 인해 연방 정부는 새로운 세입원을 찾아야 했고, 1862 년 「세입법(12 Stat. 423)」에 연방 상속세(federal death tax)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1862 년의 이 세금은 1797 의 인지세와 차이점이 있었는데, 유언장 및 유산관리장의 공증에 대한 인지세뿐만 아니라 상속세도 포함한다는 점이었다. 원래 상속세는 개인 재산에만 적용되었고, 유증의 가치나 유산의 규모가 아니라 수유인-피상속인 관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었다. 세율 범위는 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에 대한 유증의 경우 0.75 퍼센트에서, 방계혈족 및 피상속인과 친족 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한 유증의 경우에는 5 퍼센트에 달했다. 1,000 달러 미만 유산의 경우와 배우자에 대한 유증은 면제 대상이었다. 유증 기부의 경우, 이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조세를 운용해야 한다는 의회 내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5 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었다.[9] 인지세는 누진율이 적용되었으며, 그 범위는

7) 1979「인지세법(1 Stat. 527)」.
8) 자리츠키 외 (1984), 연방 유산세, 증여세, 세대생략세: 입법사와 현행법에 대한 설명, 보고서 제84-156A호.
9) 세금분석국 (1963), 미국 상속세의 입법사, 비출판 자료

2,500 달러 미만의 유산일 경우 50 센트, 10 만~15 만 달러에 대해서는 20 달러, 15 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매 5 만 달러마다 또는 초과 잔여분에 대해 10 달러가 추가로 부과되었다.

자료A

1864 상속세율

관계	재산에 대한 세율 (백분율)	유산에 대한 세율 (백분율)
직계비속, 직계존속	1.0	1.0
형제자매	2.0	1.0
형제자매의 비속	2.0	2.0
4촌 이내의 혈족	4.0	4.0
6촌 이내의 혈족	5.0	5.0
그 밖의 혈족 또는 친족이 아닌 사람	6.0	6.0
기부	6.0	6.0

세계법제정보센터

1864 년이 되자 남북전쟁의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1862 년 법의 개정법이 통과되었다.[10] 개정 사항으로 상속세(succession tax) 즉, 부동산 유증에 대한 세금이 추가되었고, 기존 상속세율이 증가하였다(자료 A). 그 밖에도 혼인 증여를 제외한, 피상속인의 생전 이루어지는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어 미국 최초의 양도세가 도입되었다. 기부 목적의 부동산 양도는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다. 남성 배우자와는 달리 여성 배우자에 대한 유증과 미성년자에 대한 1,000 달러 미만 유증의 경우에는 상속세가 면제되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뒤이어 전쟁 부채가 해소됨에 따라, 1864 년 법에 의한 추가 세입의 필요성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그 결과 1870 년, 상속세는 모두 폐지되었다.[11] 인지세는 1872 년에 폐지되었다.[12] 1863 년부

10) 1864「국내세입법(13 Stat. 285)」제124조~제150조.
11) 1870「국내세금관세법(16 Stat. 269)」제27조.
12) 1867「국내세입법(14 Stat. 169)」, 1872「관세및국내세입법(17 Stat. 256)」제36조.

터 1871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상속세로 충당한 연방 정부의 예산은 약 1,480 만 달러에 달한다.

3. 1898 「전쟁세입법」

19 세기 후반에 걸쳐 산업혁명은 미국 경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미국의 주요 재원이자 정치적 원동력으로 산업이 농업을 대체했다. 전통적으로 연방 세입의 주된 수입원인 관세와 부동산세는 농부에 따라 불균형하게 적용된 반면, 산업으로 축적된 자산에는 상대적으로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많은 개혁가들이 이러한 자산가에게 과세를 하여 조세 형평을 달성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이에 반대하는 측은 그러한 세금이 자산 축적의 동기를 없애고 자본 시장의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13)]

이러한 상황에서 1898 년에 연방 상속세(Federal Legacy Tax)가 미국-스페인 전쟁을 맞아 세입 확보 수단으로 제안되었다. 전시에 부과되었던 앞의 두 연방 상속세와 달리, 1898 년의 법안은 열띤 논쟁을 야기하였다.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상속세는 법으로 제정되었다.[14)] 비록 명칭은 상속세였지만, 수유인이 아닌 유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이었으며, 현행 연방 유산세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세율은 유산의 규모와 수유인-피상속인 관계에 따라 0.75 퍼센트부터 15 퍼센트까지 범위로 적용되었다.(자료 B 참고) 개인 재산만이 과세 대상이었다. 1 만 달러의 면제가 제공되어 소규모 유산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살아 있는 배우자에 대한 유증 역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901 년에 들어서 자선, 종교, 문학, 교육 단체로의 증여와 예술 증진 및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단체로의 증여 등 특정 증여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었다.[15)] 미국-스페인 전쟁은 1902 년에 끝나고, 같은 해에 이 세금은 폐지되었다.[16)] 비록 시행 기간은 짧았지만, 세입은 약 1,410 만 달러에 달했다.

13) 비트커 외 (2005), 4쪽.
14) 1898「전쟁세입법(30 Stat. 448, 464)」.
15) 1901「전쟁세입감면법(31 Stat. 956)」.
16) 1902「전쟁세입폐지법(32 Stat. 92)」제7조.

자료B

1898 상속세율

관계	유산규모에 따른 세율				
	10,000달러 ~ 25,000달러 (백분율)	25,000달러 ~ 100,000달러 (백분율)	100,000달러 ~ 500,000달러 (백분율)	500,000달러 ~ 1백만 달러 (백분율)	1백만 달러 이상 (백분율)
	(1)	(2)	(3)	(4)	(5)
직계비속, 존속, 형제자매	0.750	1.125	1.500	1.875	2.250
형제자매의 비속	1.500	2.250	3.000	3.750	4.500
4촌 이내의 혈족	3.000	4.500	6.000	7.500	9.000
6촌 이내의 혈족	4.000	6.000	8.000	10.000	12.000
그 밖의 사람	5.000	7.500	10.000	12.500	15.000

IV. 현대의 유산세

상속세가 폐지된 이후로, 새롭게 등장한 기업 소유 형태인 지주 회사로 인해,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합병이 경제의 제조 분야에서 일어났다. 이는 소수의 강력한 회사와 그 회사를 대표하는 사업자에게 부를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자본력은 곧 정치적 권력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다시 미국에 금권정치가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진보주의 운동의 성장을 촉발하였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과 같은 진보주의자들은 부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로 상속세와 누진소득세를 지지하였다.[17] 이러한 견해는 결과적으로 수정헌법 제 16 조의 통과와 연방 소득세의 입법을 이끌어 내었다. 연방 유산세는 또 다른 전쟁, 즉 세계 1 차 대전이 발발하고 나서 비로소 도입되었다.

17) 구체적 사례는 비트커 외 (2005), 3-9쪽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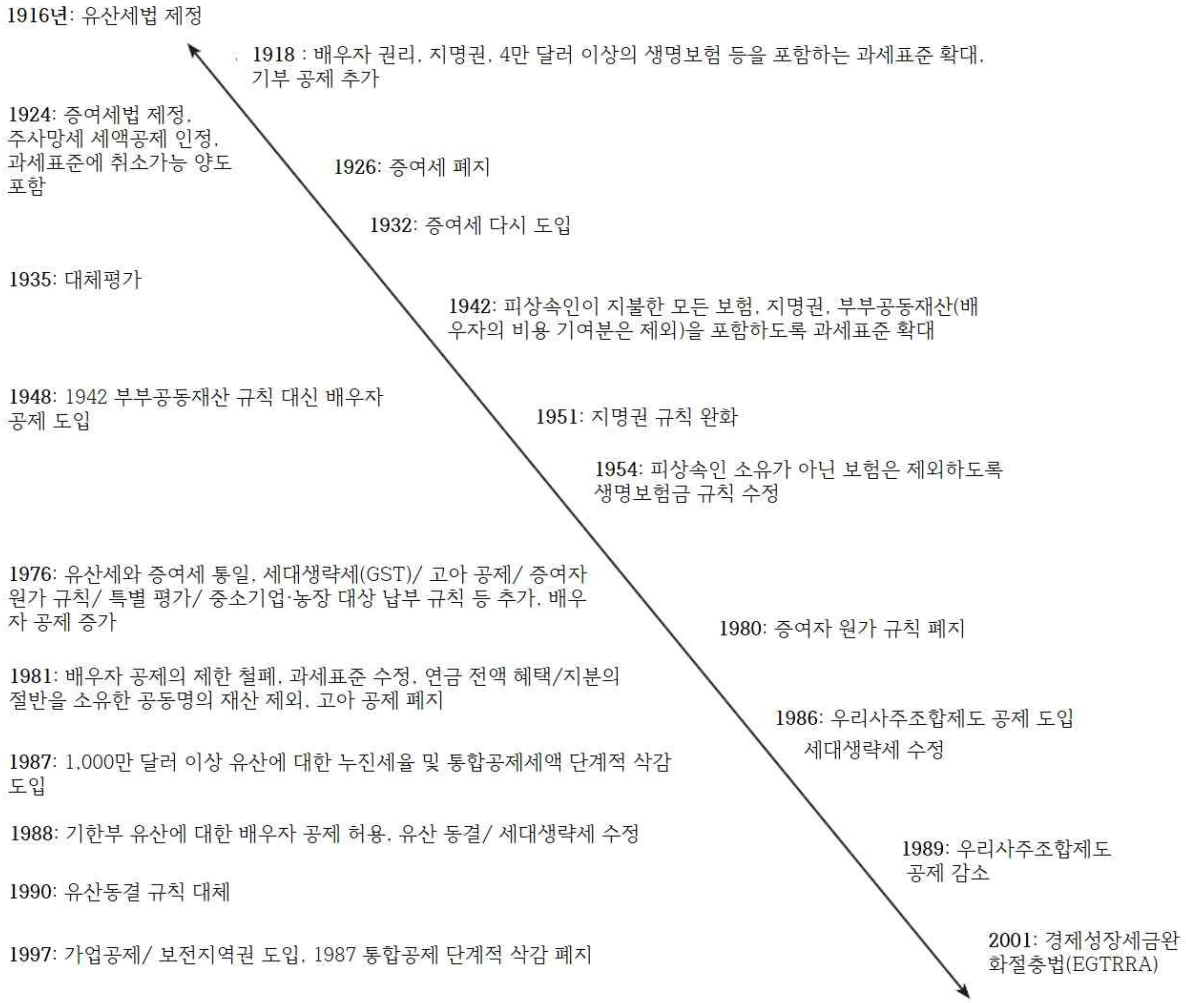
1916 년의 「세입법(39 Stat. 756)」은 유산에서 수유인에게로 부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도입하였고, 수유인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상속세(inheritance tax)와는 다르게 유산 자체에 세금이 부과되었다. 이 세금이 과세 대상으로 하는 순 유산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전체 재산인 유산총액에서 공제액을 제한 것으로 정의된다. 거주자의 경우 5 만 달러의 면제가 주어졌던 반면, 미국에 소유 재산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면제를 적용받지 못했다. 세율은 최초 5 만 달러에 대해서는 1 퍼센트, 그리고 5 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 퍼센트까지 누진율이 적용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세금 납부 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1 년이며, 사망 후 1 년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액의 5 퍼센트에 해당하는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세금 체납의 경우, 납부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6 퍼센트의 연체료가 부과되었다.

연방 유산세가 도입된 이후로 90 년 동안 미국 의회는 유산세 제도에 중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수정하는 입법을 해 왔다.(자료 C 참고) 또한, 신고 기준치, 과세 등급, 한계세율에 대한 조정이 때때로 이루어져 왔다.(자료 D 참고) 유산세 제도의 주요 변천사는 크게 1916 년~1948 년, 그리고 1976 년~현재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 Laws Information Center

자료 C

유산세법의 주요 변화: 1916 년부터 현재까지



자료D

유산세 면제금액 및 세율

연도	면제금액 (달러)	최초 세율 (백분율)	최고 세율 (백분율)	최고 과세 등급 (달러)
	(1)	(2)	(3)	(4)
1916	50,000	1.0	10.0	5,000,000
1917	50,000	2.0	25.0	10,000,000
1918-1923	50,000	1.0	25.0	10,000,000
1924-1925	50,000	1.0	40.0	10,000,000

1926-1931	100,000	1.0	20.0	10,000,000
1932-1933	50,000	1.0	45.0	10,000,000
1934	50,000	1.0	60.0	10,000,000
1935-1939	40,000	2.0	70.0	50,000,000
1940 [1]	40,000	2.0	70.0	50,000,000
1941	40,000	3.0	77.0	10,000,000
1942-1976	60,000	3.0	77.0	10,000,000
1977 [2]	120,000	18.0	70.0	5,000,000
1978	134,000	18.0	70.0	5,000,000
1979	147,000	18.0	70.0	5,000,000
1980	161,000	18.0	70.0	5,000,000
1981	175,000	18.0	70.0	5,000,000
1982	225,000	18.0	65.0	4,000,000
1983	275,000	18.0	60.0	3,500,000
1984	325,000	18.0	55.0	3.000.000
1985	400,000	18.0	55.0	3,000,000
1986	500,000	18.0	55.0	3,000,000
1987-1997 [3]	600,000	18.0	55.0	3,000,000
1998	625,000	18.0	55.0	3,000,000
1999	650,000	18.0	55.0	3,000,000
2000-2001	675,000	18.0	55.0	3,000,000
2002	1,000,000	18.0	50.0	2,500,000
2003	1,000,000	18.0	49.0	2,000,000
2004	1,500,000	18.0	48.0	2,000,000
2005	1,500,000	18.0	47.0	2,000,000
2006	2,000,000	18.0	46.0	2,000,000
2007	2,000,000	18.0	45.0	1,500,000

[1] 10%의 부가세가 추가됨.

[2] 통합세액공제가 면제금액을 대신함.

[3] 1,000만 달러 이상의 유산에 대한 누진세율 및 통합세액공제 단계적 삭감.

1. 주요 세법 변화: 1916 년부터 1948 년까지

1916 년의 유산세 제정 이후 최초로 세제에 일어난 주요 변화는 생존자 사이의 증여에 대한 세금, 즉 증여세를 도입한 것으로, 미국 증여세는 1932 년에 양도세 제도 안에 자리를 잡았다.[18] 이 세금을 부과하게 된 이유는 부유층이 생전에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유산세를 회피할 수 있음을 의회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1932 년의 규정에 따르면 증여자(donor)는 5 만 달러까지는

18) 이 세금은 1924「세입법(43 Stat. 253)」에서 처음 도입되고, 1926「세입법(44 Stat. 9)」에서 폐지되었다가, 1932「세입법(47 Stat. 169)」에서 다시 도입되었다.

세금 없이 생전에 양도할 수 있었으며, 수증자(donee) 1 인당 연간 5 천 달러의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1935 년 「세입법(49 Stat. 1014)」은 선택적 평가일 선정(optional valuation date election)을 도입하였다.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총액의 추산가치로 유산세 신고 당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법은 세금 납부를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1 년 이후까지를 기준으로 유산 평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가령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이 사망일 이후 그 가치가 현저히 하락할 경우 - 1929 년 대공황 시기 유산들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 유언집행자는 추산가치가 낮은 사망일 이후를 기준으로 유산을 평가할 수 있었다. 선택적 평가일은 오늘날 대체평가일로 일컫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6 개월로 기간이 변경되었다.

1976 년 이전에 유산세법에 있었던 변화 중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1948 년 「세입법(62 Stat. 110)」으로 도입된 유산 및 증여세에 대한 배우자 공제(marital deductions)였다. 1948 년 법이 제정한 유산세 배우자 공제에 따라 생존 배우자에게 양도되는 재산의 가치를 피상속인의 유산에서 공제할 수 있었는데, 이는 유언이나 그 밖의 다른 양도 형태에 상관없이 적용되었다. 다만, 공제 범위는 피상속인의 실질 유산총액, 즉 채무와 관리비용을 제외한 유산총액의 절반으로 제한되었다. 또한 이 법은 배우자에 대한 생전 증여에 대해서도 비슷한 공제를 규정하였다.

2. 주요 세법 개정: 1976 년부터 현재까지

1948 년 이후 미 의회 의사록은 유산세와 증여세 세제 전반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없다가, 1976 년 「세금개혁법(TRA, 90 Stat. 1521)」의 제정을 계기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 법은 “생전 증여와 사망으로 개시되는 양도에 부과하는 단일 누진세율”로 구성된 유산세와 증여세 통일 제도를 마련하였다.[19] 이전에는 증여에 적용된 세율이 낮았기 때문에 “재산을 생전에 물려주는 것에 비해 사망하여 재산을 남기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19) 자리츠키 외, 18쪽.

들었다.” [20] 또한 1976 년 세금개혁법은 유산세 면제금액과 생전 증여세 면제금액을 합쳐 “증여자의 생전 증여세액에 대한 또는 증여자가 사용하지 않은 채로 사망하여 증여자 유산세액에 대한 적용이 가능한 단일 통합 유산세 및 증여세 세액공제”로 규정했다.[21] 수증자 1 인당 3 천 달러의 연간 증여 면제는 기존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 밖에 이 법은 유산세 신고 면제금액의 연간 상승치도 규정하였는데, 1977 년 피상속인의 경우 기존 6 만 달러에서 12 만 달러로, 1980 년 이후 사망하는 피상속인의 경우 신고 기준 금액이 175,656 달러에 달했다.

1976 년의 세금개혁은 세대생략세(GSTs)도 도입하였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양도자가 유언신탁을 설립하여 그 신탁의 소득이 자녀의 생애 동안 그 자녀에게 지급되고, 그 자녀가 사망하는 경우 신탁의 대리인이 양도자의 손자녀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시할 수 있었다. 양도자의 유산에 포함되는 신탁자산은 양도자가 사망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었다. 그리고 그 손자녀의 유산에 포함되는 모든 신탁자산은 손자녀가 사망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 사례의 중간세대 수혜자인 양도자의 자녀는 신탁자산으로부터 나온 소득을 향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자산에 대한 유산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의회는 중간세대 수혜자 지분의 종료를 납세항목으로 포함하기 위한 여러 규칙을 만들어 앞에서 언급한 맹점에 대응하였다. 이러한 규칙에 따라 양도자에게 허용된 세대생략 양도의 면세범위는 최대 1 백만 달러이며, 그 초과분은 최고 한계유산세율의 적용을 받았다. 증여세 면제의 경우, 부부 합산으로 각자의 세대생략 면세액을 합한 2 백만 달러까지 면제받을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세대생략세는 각 세대로 상속되는 부의 이동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2]

1981 년 「경제회복세법(95 Stat. 172)」은 유산세법에 여러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1982 년 이전까지 배우자 공제는 살아 있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갖는 기한부 지분(terminable interest) 즉, 비상속인의 배우자가 사망할 경

20) 비트커 외 (1990), 유산 및 증여 연방조세제도, 리틀브라운앤컴퍼니,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20쪽.
21) 자리츠키 외, 18쪽.
22) 비트커 외 (1990), 30쪽.

우 재산의 수증자를 지명할 권한을 부여하는 지분이 있는 재산의 양도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었다. 그러한 재산은 결과적으로 배우자의 유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1981 년 「경제회복세법」은 지분이 기한부가 아니더라도, 재산이 기한부 유산(qualified terminable interest property, QTIP)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허용하였는데, 기한부 유산이란 배우자가 자신의 생애 동안 단독으로 권리를 갖는, 적어도 연간 단위의, 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으로, 이러한 재산에 대해 배우자는 사망할 경우 양도 권리를 갖지 않는다. 다만 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기한부 유산을 배우자의 유산총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1981 년 법에서 최초로 유산세 및 증여세에 대한 무제한 배우자 공제 도입되어, 배우자 간 양도에서 받을 수 있는 유산세 및 증여세 공제액의 수량적 한도를 제거하였다.

1981 년 「경제회복세법」으로 인해 증여세와 유산세에 적용되는 양도세 통합공제가 상향 조정되었다. 기존 47,000 달러에서 192,800 달러로 증가한 공제액은 6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었으며, 이에 따라 면세금액도 같은 기간 175,625 달러에서 600,000 달러로 증가하였다. 같은 법에 따라, 연간 증여세 면제액 또한 수증자 1 인당 1 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수증자의 학자금 또는 의료비 지출금에 대한 연간 증여세 면제액은 무한으로 허용되었다. 또한, 이 법을 통해 의회는 250 만 달러보다 큰 규모의 양도에 적용되는 유산세, 증여세 및 세대생략세의 최고 세율을 70 퍼센트에서 50 퍼센트로 경감하였다. 이렇게 낮아진 세율은 4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후속 입법과정에서 지연되었다. 이 문제는 1993 년 「종합예산절충법(107 Stat. 312)」의 통과로 해결되었다. 이 법은 250 만 달러와 300 만 달러 사이의 양도 과세가액에 대해 적용될 53 퍼센트의 새로운 한계세율을 도입하였으며, 300 만 달러를 초과하는 양도 과세가액에 대해서는 55 퍼센트의 한계세율 최대한도를 정하였다.

1997 년 제 105 대 의회는 1997 년 「납세자 부담 완화법(111 Stat. 788)」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서 다루는 유산세 및 증여세법 개정사항 중 가장 중중요한 것은 2006 년까지 345,800 달러로 통합공제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그 효과로 인하여 100 만 달러로 늘어난 유산세 신고 기준금액의 증가였다. 또한 1997 년 법으로 사업이 전체 유산총액의 최소 50 퍼센트를 차지하는 유산에 대한 가업공제가 추가되었다. 이 밖에도 이 법의 중요한 점은 여러 기준치와 한계치가 물가에 따라 조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례로는 연간 증여세 면제액, 평생 세대생략세 면제액, 그리고 농장 또는 사업에 사용된 부동산 가치평가에 대한 특별 규칙에 따른 허용 한계 가치 등을 들 수 있다.

2001 년에 제정된 「경제성장 세금완화 절충법(115 Stat. 38)」은 양도세 제도에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 특히 종국에는 세금을 폐지한 것이 눈길을 끈다. 이 법은 2001 년 12 월 31 일 이후 사망하는 피상속인 대상 면제금액의 주기적 인상을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2009 년까지 실제 신고 기준금액은 350 만 달러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 뒤 2010 년에 사망하는 피상속인에 대한 세금은 폐지되었다.[23] 세율표 역시 이 법에서 개정되었으며, 주(州)에 납부한 상속세에 대해 주어졌던 세액공제(credit)는 감면(deduction)으로 대체되었고, 생전 증여세 면제금액은 증가하였다. 다만, 의회의 후속 조치는 금지되었고, 이 법에 포함된 모든 규정은 2011 년에 종료되어 이 법의 영향을 받았던 기존의 세법은 다시 2001 년의 규정으로 복귀되었다. 그 결과 2011 년 이후 발생하는 사망에 대해서는 면제금액을 100 만 달러로 하는 기존의 유산세가 다시 적용되기 시작했다.

3. 현재의 유산세법

현행 유산세법은 사망한 모든 미국인 중 1976 년 12 월 31 일 이후 피상속인의 조정 증여세 과세가액 및 1976 년 9 월 8 일 이후 증여의 전체 면제 항목이 반영되고 사망일을 기준으로 평가된 유산총액이 하단의 “자료 E” 와 같거나 클 경우, 연방 유산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거주자 외국인의 유산은 미국에 소재한 재산이 6 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

23) 「경제성장 세금완화 절충법」 이전의 법에 따라, 시세가 높아진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은 사망 시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으며, 상속 자산을 물려받아 매각하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었다. 위 법에 따라 유산세가 폐지된 이후,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상속 자산에 대한 기반 조정값(step-up in basis)은 폐지되고, 면제의 대상이 되었다.

야 한다. 피상속인의 모든 자산을 비롯하여 공동소유 지분, 부부공동재산의 자산은 과세대상인 유산총액에 포함된다. 그 밖에도 대부분의 생명보험금, 피상속인이 일반지명권을 소유하였던 재산, 그리고 취소 가능하거나 또는 정가 보다 낮게 이루어진 생전 특정 양도 등도 포함대상이다. 자산의 가치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6 개월 기간 동안 하락하는 경우, 그 기간 안의 어느 일자를 기준으로 유산의 자산 가치를 환산할 수 있다. 주로 중소기업이나 농장으로 이루어진 유산의 경우에는 특별 가치 환산 규칙(special valuation rules)과 납부 연기 계획(tax deferment plan)이 적용된다.

자료 E

양도시기 귀속연도별 연방 양도세율 및 면제금액, 2005-2011

귀속연도	유산세 면제금액 (달러)	세대생략세 면제금액 (달러)	증여세 면제금액 (달러)	최대 통합공제 (달러)	유산세 및 세대생략세 최고 세율 (백분율)
	(1)	(2)	(3)	(4)	(5)
2005	1,500,000	1,500,000	1,000,000	555,800	47.0
2006	2,000,000	2,000,000	1,000,000	780,800	46.0
2007	2,000,000	2,000,000	1,000,000	780,800	45.0
2008	2,000,000	2,000,000	1,000,000	780,800	45.0
2009	3,500,000	3,500,000	1,000,000	1,455,800	45.0
201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000,00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011	1,000,000	1,000,000	1,000,000	345,800	55.0

유산 관리 비용과 손실, 장례비용, 그리고 피상속인의 부채는 과세대상이 되는 유산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특정 제한에 따른 배우자 종신 재산 소유권 유증을 포함한 배우자 유증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유증 기부와 주에 납부한 상속세 역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서는 통합세액공제 또는 적용가능한 세액공제액과 공제를 받을 수 있다.[24] 유산세 신고(문서 제 706 호)는 6 개월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9 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피상

24) 통합세액공제 또는 적용세액공제는 피상속인의 사망연도에 적용되는 면제액에 대하여 산출된 유산세에 해당한다. 세액공제는 생전 양도로 발생하는 증여세와 사망으로 발생하는 유산에 모두에 차감 적용할 수 있다.

속인 면제금액을 초과하는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세금과 특정 퇴직기금 자산에 대한 세금은 유산세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상환한 미국 국채 이자 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V. 양도세 제도의 범위

양도세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인구 규모로 볼 때, 양도세 제도의 범위는 상당히 좁다. 1916 년부터 2004 년 사이의 전체 성인 사망 건수 중 과세대상 유산세 신고 건수의 비율은 자료 F 와 같다. 이 기간 동안 과세대상 유산세 신고 건수는 대체로 전체 성인 사망의 2 퍼센트 미만으로 나타난다. 1954 년 이후 사망에 대해서 과세 유산의 비중이 늘어 1976 년에는 거의 8 퍼센트로 최고점을 찍었고, 이 시기 과세대상 신고 건수는 139,000 건 이상이었다. 1976 년의 세금개혁법은 1954 년 이후 6 만 달러로 유지되었던 면제액의 범위를 사실상 두 배로 증가시켰다. 그 뒤로도 유산세 신고 기준 금액은 몇 차례 인상되었고, 이에 따라 과세대상 피상속인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게 유지되었다.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 Laws Information Center

자료 F

전체 성인 사망에 대한 과세대상 유산세 신고 비율, 1916-2004



참고: 미국 거주자이며 20세 이상의 성인 사망만을 포함

개인 및 법인 소득세의 세입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양도세 제도의 범위는 좁다. (자료 G 참고) 거의 예외 없이, 연방 유산세와 증여세 세수는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로 연방 예산금액의 1~2 퍼센트 정도에 불과하며, 1972 년에는 전후 가장 높은 2.6 퍼센트에 달했다. 최근 연방 유산세 증여세 세수는 전체 연방 예산금액의 약 1 퍼센트를 이루고 있다.

자료 G

전체 세입 중 유산세 및 증여세 비중, 1917-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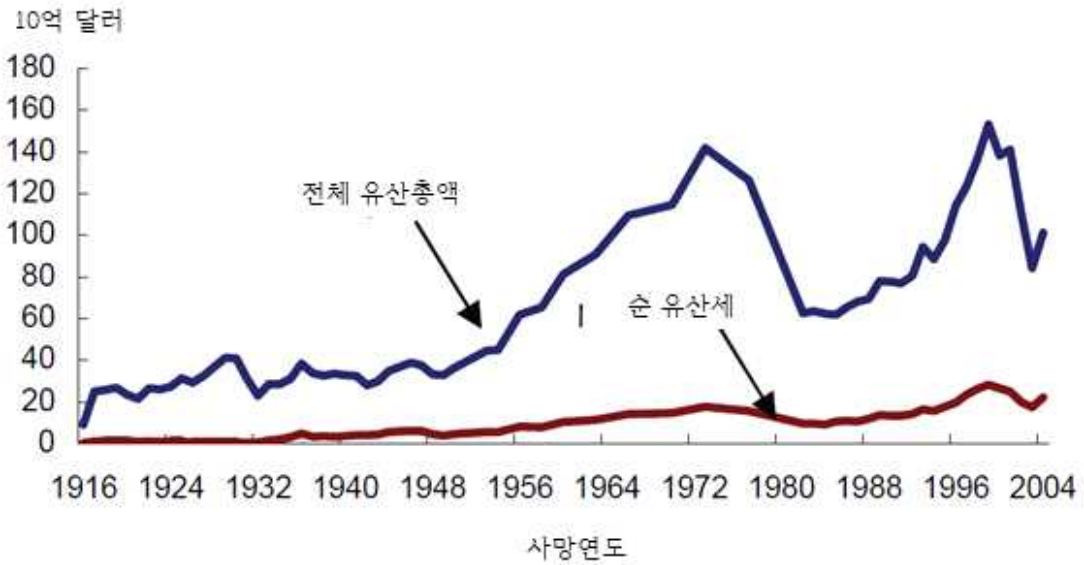
참고. 2006 및 2007은 추정치임
출처. 데이빗 쥴피언 (1998), *연방 유산세 및 증여세*, OTA 논문집 제80호;
미국 국세청 통계집, 2007 회계연도;
미국 정부 중간예산검토

자료 H 는 1916 년부터 2004 년 동안 과세대상 세금 신고가 접수된 유산총액과 순 유산세를 2004 년 달러로 환산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유산총액과 순 유산세 모두 실제로 상당한 수준 증가하였는데, 이는 유산세법과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결과이다. 전자의 영향은 자료 H 를 앞선 자료 D 및 자료 F 와 비교하면 알 수 있다. 1917 년과 1950 년 사이 전체 유산총액은 2004 년 달러를 기준으로 200 억에서 400 억 사이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전체 순 유산세는 1917 년 10 억 달러에서 1950 년 40 억 달러로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같은 시기 세율의 인상과 맞물려 있다.

1950 년 이후로 전체 유산총액과 전체 순 유산세는 급증하였는데, 이는 6 만 달러까지의 세금 면제가 1977 년까지 변함없이 지속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이후 반복적으로 시행된 면제 기준금액 인상과 최고 세율 인하는 실질 전체 유산총액과 전체 순 유산세를 1976 년 최고치보다 실질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였고, 이는 1990 년대 후반 최고치 기록이 경신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1999 년 이후 이 두 수치는 1997 년 「납세자 부담 완화법」과 2001 년 「경제성장 세금완화 절충법」의 시행으로 인한 면세 기준금액 인상과 세율 인하와 더불어 감소하였다.

자료H

2004 달러 환산 전체 유산총액 및 순 유산세 세금신고분, 1916-2004



참고. 달러화 금액은 도시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04년 달러로 환산한 금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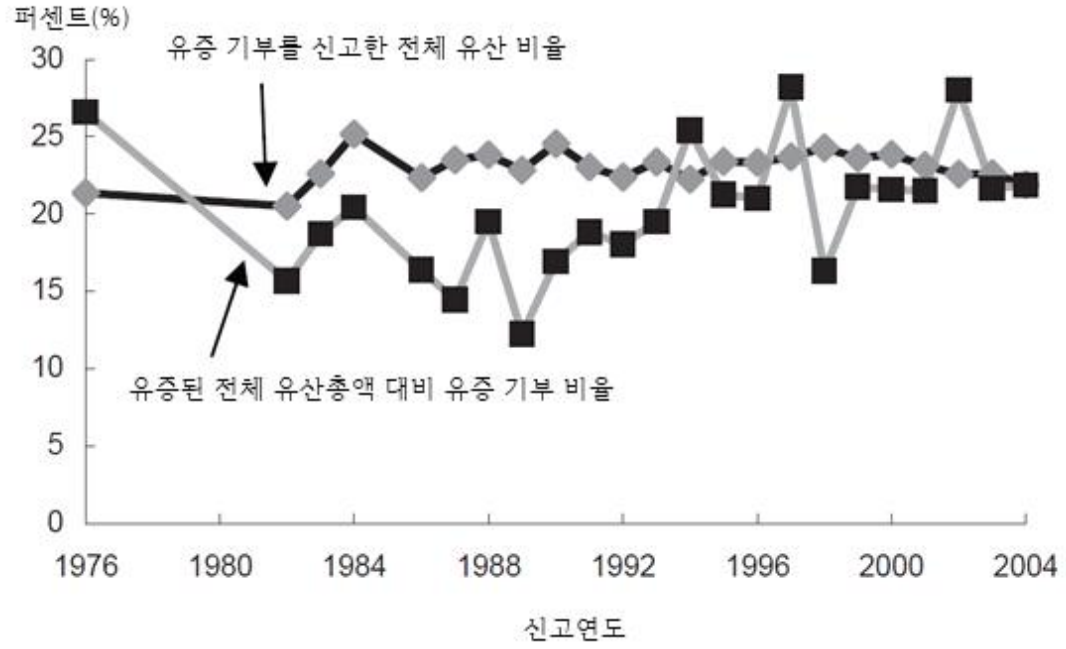
Ⅵ. 기부

유산세가 경제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일부 학자들은 유산세법이 무제한으로 규정하는 기부금 공제로 인하여 유산세가 기부 행태와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혀낸 바 있다. 자료Ⅰ는 유산총액이 2004 년 달러로 100 만 달러 이상인 전체 피상속인 중 유증 기부에 대한 공제를 신청한 유산 건수를 1976 년부터 2004 년까지 유산세 신고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유증 기부를 한 피상속인의 백분율이 1983 년 이전에는 도합 20 퍼센트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평균 24 퍼센트에 이르는 정도로 어느 정도 상승하였다. 자료Ⅰ는 피상속인이 유증 기부한 유산총액의 share 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증 기부된 자산의 가치는 전체 유산총액의 비율로 보면 1976 년 보다 1981 년 「경제회복세법」의 제정 직후 낮게 나타났다.[25] 이와 같은 차이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경제회복세법」의 두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제한 배우자 공제의 도입이 일부 피상속인들이 유증 기부 대신에 배우자에게 유증하는 것을 유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이 법 시행 이후 유증 기부가 더 이상 배우자 유증에 비해 절세효과를 갖기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생전 기부의 규모를 늘리거나 유증 기부의 시기를 배우자 사망 이후로 연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부를 시간적으로 조절한 부부가 있을 수 있다. 둘째, 「경제회복세법」에 따라 유산세 최고한계세율이 기존 77 퍼센트에서 55 퍼센트로 감소하였는데, 일부 연구에 따르면 세율은 기부유증의 규모와 유증을 받는 자선 단체의 수 등 사망으로 인한 기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6]

25) 1977-1981 간의 소득통계국 유산세 신고 자료 없음
26) 줄피언 (1991), “기부유증과 유산세,” 전미세금저널, 44(2), 169-180쪽.

자료I

기부, 1976-2004
2004 달러 환산 전체 유산총액이 1백만 달러 이상인 피상속인 대상



참고. 1977-1981 기간 신고 자료 없음. 달러화 금액은 도시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04년 달러로 환산한 금액임.

World Laws Information Center

VII. 자산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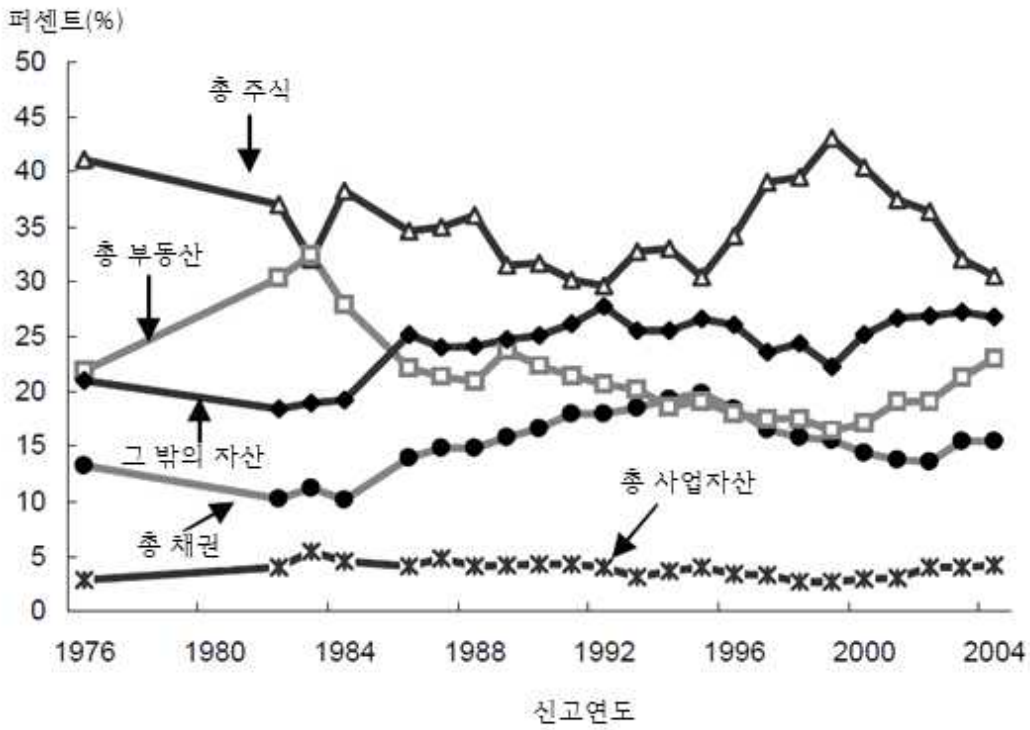
유산세 신고에 따라 드러난 부유한 피상속인의 자산 구조는 시기별 미국 경제와 투자 시장에 대한 정보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많은 학자들의 관심 대상이 된다. 자료 J 는 1976 년부터 2004 년 사이 신고된 유산 중 유산 총액이 2004 년 달러로 백만 달러 이상인 피상속인의 자산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대부분 기간 뮤추얼 펀드를 포함한 총 주식은 전체 유산 총액의 30~40 퍼센트를 차지해, 자료에 포함된 피상속인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백분율 수치에서 보이는 일부 변동은 전반적인 주식 시장의 움직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1995 년 이후 주식 형태의 유산총액 비율은 기존 30 퍼센트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999 년에는 최고 43

퍼센트에 달했고, 신고된 주식 자산의 액수는 2004 년 달러로 환산하면 840 억 달러 이상이다. 이 기간 동안 주식 시장은 전체적으로 호황기를 누리고 있었으며, 이는 1994 년 1 월부터 1999 년 1 월 사이 S&P 500 지수가 165 퍼센트 증가한 사실에서도 드러난다.[27] 2004 년에 유산 총액 중 주식의 비율은 31 퍼센트 아래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4 년 1 월 S&P 500 지수가 2000 년 8 월 최고치로부터 34 퍼센트 감소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자료J

유산세 신고상의 자산 구조, 1976-2004

2004 달러 환산 전체 유산총액이 1백만 달러 이상인 피상속인 대상



참고. 달러화 금액은 도시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04년 달러로 환산한 금액임. 총 주식은 상장주식과 폐쇄회사 주식을 포함. 총 사업자산은 중소기업, 유한책임회사, 농장을 포함하며, 농지는 포함하지 않음.

27) 참고 링크: http://www2.standardandpoors.com.

상업용 부동산과 농지를 포함한 총 부동산은 대체로 1976 년부터 1990 년까지의 기간 동안 전체 유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이후 시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1983 년에 32 퍼센트를 뛰어넘는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1990 년대 후반에 주식 형태의 전체 유산총액 비중은 상당히 증가했던 반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1999 년 17 퍼센트 미만으로 하락했다. 1999 년 이후 전체 유산총액에서 부동산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여 2004 년에는 23 퍼센트에 달했고, 100 만 달러 이상의 유산총액을 보유한 피상속인 중 신고된 부동산의 가치가 기록적인 460 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이는 주택 가격의 상승 – 1999 년 제 1 분기와 2004 년 1 분기에 42 퍼센트 상승 – 및 2000 년 이후 전반적 주식시장의 하향세와 일치한다.[28)]

1976 년부터 2004 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주식회사 및 연방.주.지방 정부 등에서 발행한 총 채권과 특정 종류의 채권에 투자한 뮤추얼 펀드는 전체 유산총액이 2004 년 달러를 기준으로 백만 달러 이상인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의 13 퍼센트에서 20 퍼센트를 차지했다. 현금, 담보, 어음 등 그 밖의 다른 자산은 같은 기간 동안 유산총액의 18 퍼센트에서 27 퍼센트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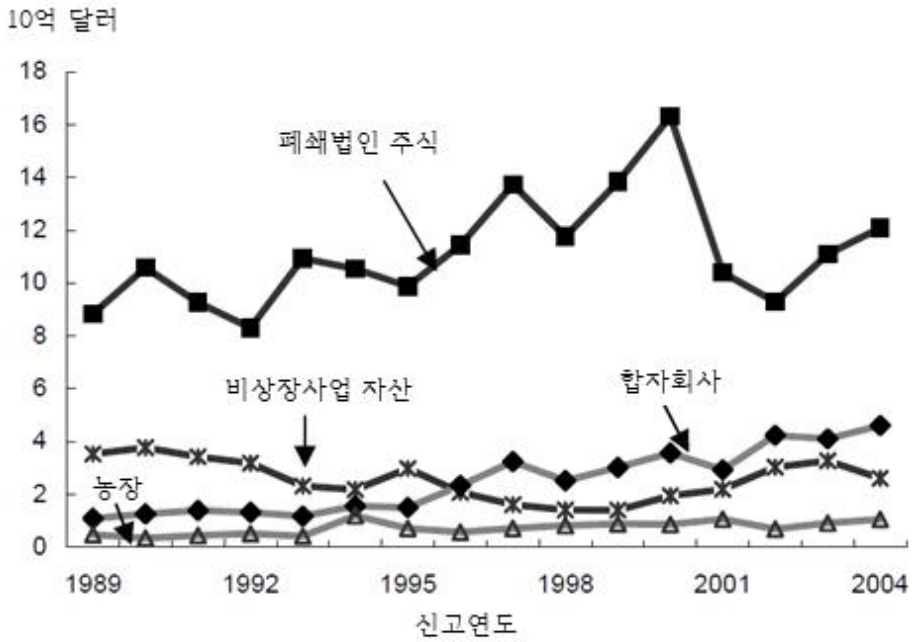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 Laws Information Center

자료 J 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 농장(농지 제외), 유한책임회사 등 총 사업 자산은 1976-2004 기간 중 유산총액의 5 퍼센트 또는 그 미만에 달했다. 전체 유산총액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세가 중소 농장과 가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종류의 자산은 여러 학자와 정책입안자들의 특별 관심 대상이다.

28) 주택 가격 변동은 연방주택기업감독청(OFHEO)의 주택가격지수를 활용하여 산출함, http://www.ofheo.gov/HPI.asp.

자료K

유산세 신고상의 폐쇄회사 및 비상장사업 자산, 1989-2004
2004 달러 환산 전체 유산총액이 1백만 달러 이상인 피상속인 대상



참고. 달러화 금액은 도시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04년 달러로 환산한 금액임. 비상장사업 자산에는 자영업, 일반합명회사 및 그 밖의 불특정 사업이 포함됨. 농장은 농지를 포함하지 않음.

자료 K 는 전체 유산총액이 2004 년 달러 기준 100 만 달러 이상인 폐쇄법인 및 비상장 사업 자산의 1989 부터 2004 년까지 실질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29] 자산 범주 별로 신고 가치가 시기에 따라 변동을 보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 추세가 드러난다. 폐쇄법인의 주식 가치(자료 J 의 "총 주식" 범주에 포함)는 1995 년 이전이 그 이후보다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부분적으로 1989-2004 기간 중 최고 개인소득세율의 변화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세율은 기업의 조직 형태에 대한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30] C 법인으로 조직된 회사의 소득은

29) 1989년 이전 사업자산 보유에 대한 세금 신고연도별 자료 없음.
30) 캐롤 외 (1997), "세금과 기업의 조직형태 선택," 세금분석국 보고서, http://www.ustreas.gov/offices/tax-policy/library/ota73.pdf.

법인세제에 따라 과세되는 반면, 자영업, 합자회사 및 S 법인을 비롯한 다른 조직 형태를 갖는 사업의 소득은 개인소득세제에 따라 과세된다. 이 기간 동안 최고 법인세율은 1989-1992 년 34 퍼센트에서 1992 년 이후 35 퍼센트로 거의 변동이 없었던 반면, 개인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1989-1990 년 28 퍼센트에서 1991-1992 년 31 퍼센트, 그리고 1993-2000 년 39.6 퍼센트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자료 K 에서 보이는 추세는 1993 년 이후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소득세율로 야기된 비법인에서 법인 조직 형태로의 이동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기여한 가능성이 있는 다른 원인으로 1990 년대 중후반 주식시장의 호황을 들 수 있는데, 상장법인의 가치를 높인 요소가 폐쇄법인에도 동일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89 년과 2004 년 사이에 보고된 유한합자회사의 총가치는 11 억 달러에서 46 억 달러로 실질적으로 현저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되는 원인 중 하나로 이 기간 중 벤처금융과 헤지펀드의 성장을 들 수 있다. 1995 년과 2005 년 동안 벤처금융의 연간 투자 규모는 80 억 달러에서 1,070 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31] 비록 이러한 투자 수준이 2001 년과 2002 년에 급격히 하락하였지만, 1990 년대 중반의 투자 규모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였다. 헤지펀드 역시 같은 기간 동안 비슷한 급성장을 겪었다. 한 산업 조사에 의하면, 헤지펀드로 운용되는 총 자산은 1992 년 350 억 달러에서 2003 년 5,920 억 달러로 증가하였다.[32]

농지 부동산을 제외한 농장 자산의 신고 가치는 매년 변동되긴 했지만 1989 년과 2004 년 사이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가장 낮은 총액은 1990 년으로 2004 년 달러로 환산하여 3 억 4 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가장 높은 액수는 1994 년에 신고된 120 억 달러이다.

31) 미국벤처캐피탈협회 참고, http://www.nvca.org/ffax.html.
32) 헤네시 그룹, LLC. 참고, http://www.hennesseegroup.com/information/index.html.

VIII. 결론

사망으로 인한 부와 재산의 양도에 대한 세금은 미국 역사 전반에 걸쳐 그 입법이 이루어져 왔다. 본래 위기가 닥친 시기의 세입원으로 활용되었던 연방 유산세는 1916 년 이래 미국세법으로 법전화된 이후 지속적 세제로 남아 있다. 현행 유산세가 비록 소수의 유산을 대상으로 하고 개인 및 법인 소득세제보다 비교적 세입이 적지만, 정책입안자와 학자, 그리고 일반 대중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러한 관심의 이유는 공정한 과세에 대한 여러 견해에서 사망으로 인한 양도에 대한 과세가 미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보고서는 유산세의 개괄적 역사와 그것이 미국 예산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이 보고서는 시장.기술.정책적 자극에 대해서 영향권에 놓인 계층이 보이는 경제 행위 방식도 살펴보았다.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 Laws Information Center